

# 규제영향분석서

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

### <목 차>

1.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
2. 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금융위원회	작성자	이름	민인영
	담당부서 (과)	자산운용과		직급	사무관
	국장	박정훈		연락처	02-2100-2662
	과장	김기한		이메일	asset1234@korea.kr

정책 책임자 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			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3조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법 제20조														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18.3.9.~4.18.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</li> <li>○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는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의 사후 감독 관리 강화 필요</li> </ul>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○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매 월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																	
	8.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유형</th> 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 <th>의견 수렴방식</th> <th>의견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피규제자</td> <td>금융회사</td> <td>등록된 투자자문·일임업자(179개)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이해관계자</td> <td>금융감독원 등</td> <td>-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피규제자	금융회사	등록된 투자자문·일임업자(179개)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													
피규제자	금융회사	등록된 투자자문·일임업자(179개)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○ 부실한 투자자문·일임업자를 적기에 퇴출하여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						
	11.비용편익 분석(정성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편익)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조기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투자시장 구축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 가능</li> <li>○ (비용)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빠른 퇴출을 통해 투자자 손해 등 유·무형적인 지출 비용이 최소화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		
기타	11.일몰설정 여부	X										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 법 제20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3조(등록유지요건의 완화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경우: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. 이 경우 유지요건은 <u>매 회계연도말</u> 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특정 <u>회계연도말</u> 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금융투자업자는 <u>다음 회계연도말</u> 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매 월말</u> ----- ----- <u>월말</u>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</u> ----- -----.
2. (생략)	2. (현행과 같음)

# 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모색하고자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(17.12.14)
  - 이와 관련하여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 발생 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사후 감독 강화 방안 마련
- 투자자문·일임업의 등록 및 퇴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므로, 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함

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별도의 대안은 없음

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투자자문·일임업자 등	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·금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등을 통해 상시 협의	특이사항 없음
	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	진행 중

## 3. 기대 효과

-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안정화에 기여

## II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투자자문·일임업자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저 자기자본 유지 여부를 매월말 평가하여 미 유지시 퇴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(규제수단) 매월 말 단위로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퇴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
  -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 설정 여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X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-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
  -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지요건 확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

### Ⅲ. 규제 의 실효성

#### 1. 규제 의 순응도

#####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퇴출하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는 관련 없음

##### 규제 차등화 방안

- 모든 투자자문·일임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 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

#### 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##### 행정적·재정적 집행가능성

- 투자자문·일임업자의 퇴출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

#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# 1. 추진 경과

- 체결 이후 제도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당국, 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

#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

#### 3. 종합결론

- 부실 투자자문·일임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절차를 마련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전문사모 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유지요건 기준 변경																	
	2.규제조문	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1조의3																	
	3.위임법령	자본시장법 제249조의3제8항																	
	4.유형	강화	5.입법예고	2018.3.9.~4.18															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시장진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</li> <li>○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는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키는 등의 사후 감독 관리 강화 필요</li> </ul>																	
	7.규제내용	○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최저자기자본 유지 여부 판단기준을 매 월말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																	
	8.피규제 집단 및 이해관계자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colspan="2">유형</th> <th>인원수 또는 규모</th> <th>의견 수렴방식</th> <th>의견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피규제자</td> <td>금융회사</td> <td>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(140개)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이해관계자</td> <td>금융감독원 등</td> <td>-</td> <td>입법예고</td> <td>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피규제자	금융회사	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(140개)	입법예고	-	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	-
	유형		인원수 또는 규모	의견 수렴방식	의견내용														
피규제자	금융회사	등록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(140개)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이해관계자	금융감독원 등	-	입법예고	-															
9.기대효과	○ 부실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적기에 퇴출하여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																		
규제의 적정성	10.영향평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														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											
	11.비용편익 분석(정성 분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편익)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조기 퇴출을 유도함으로써 건전한 투자시장 구축 및 투자자의 신뢰 제고 가능</li> <li>○ (비용)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빠른 퇴출을 통해 투자자 손해 등 유·무형적인 지출 비용이 최소화 가능</li> </ul>																	
기타	11.일몰설정 여부	X															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71조의3(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)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</p> <p>1. 법 제249조의3제2항제2호의 경우: 별표 3의 해당 등록업무 단위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할 것. 이 경우 유지요건은 <u>매 회계연도말</u>을 기준으로 적용하며, 특정 <u>회계연도말</u>을 기준으로 유지요건에 미달한 전문사모집합 투자업자는 <u>다음 회계연도말</u>까지는 그 유지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71조의3(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)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매 월말</u>-----</p> <p>----- <u>월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해당 월말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 I. 규제 필요성 및 대안선택

## 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-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발전 등을 모색하고자 업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이를 바탕으로 신뢰받고 역동적인 자산운용 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(17.12.14)
- 이와 관련하여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발생 시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사후 감독 강화 방안 마련
-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등록 및 퇴출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으므로, 신속한 퇴출 절차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불가피함

## 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###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의 자금을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별도의 대안은 없음

###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금융감독원, 금융투자협회, 투자자문·일임업자 등	법안 마련 과정에서 금감원·금투협회 등으로 구성된 TF 등을 통해 상시 협의	특이사항 없음
	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예고로 의견 추가 수렴	진행 중

## 3. 기대 효과

-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신속하게 퇴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안정화에 기여

## II. 규제의 적정성

### 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(규제목적)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최저 자기 자본 유지 여부를 매월말 평가하여 미 유지시 퇴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
- (규제수단) 매월 말 단위로 최저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을 유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,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속한 퇴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함
  -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퇴출

### 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	시장유인적 규제설계	국제기준 정합성	일몰 설정 여부
기술	경쟁	중기			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	X

### 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-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도 최저자기자본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존재
  - 다만 이번 개정을 통해 유지요건 확인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개월 단위로 단축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

### Ⅲ. 규제 의 실효성

#### 1. 규제 의 순응도

#####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-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퇴출하고자 하는 개정이므로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과는 관련 없음

##### 규제 차등화 방안

- 모든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이므로 이를 차등화하여 규제할 근거가 없음

#### 2. 규제 의 집행가능성

##### 행정적 · 재정적 집행가능성

-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퇴출 절차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므로 기존 금융당국의 관리·감독 여건상 규제집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

### Ⅳ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#### 1. 추진 경과

- 체결 이후 제도마련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금융당국, 업계 간 논의를 거쳐 추진

#### 2. 향후 평가계획

- 제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, 필요시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미비점 보완 예정

#### 3. 종합결론

- 부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신속하게 퇴출시키는 절차를 마련을 통해 자본시장 안정화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